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9650

발의연월일 : 2014. 3. 7.

발의자 : 박남춘 · 김재운 · 이찬열 · 전정희 · 배기운 · 이미경  
추미애 · 이원욱 · 장하나 · 민병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 · 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동수로 하며, 관련 전문가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동수로 하며, 관련 전문가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선임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의_____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